

## 「2022년 1인 가구 착한 먹거리 지원」 공모사업 공고

서울특별시에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환경을 고려한 식자재 재활용 먹거리 지원으로 1인가구 식생활 역량강화 및 먹거리 가치적 소비 실천을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31조」에 의거 「2022년 1인가구 착한 먹거리지원 사업」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3. 15.

서울특별시장

### 1. 사업개요

- **사업기간** : '22. 4.(약정체결일) ~ '22. 11.(약 8개월)
- **사업예산** : 총20백만원
- **공모선정** : 1개 단체
- **사업내용**

#### 1) 식자재 재활용 먹거리 꾸러미 지원

- **참 여** 사전교육을 통한 참여 신청자 (모집·선정 및 관리)
- **꾸러미** 기부된 식자재 재활용 《가공식품+농산물》 꾸러미 지원
- **지 원** 대기업 : 출고미달(중량미달, 기한 압박 등) 가공식품 기부  
 도매시장 : 매횠품(정상제품이나 수급불균형으로 미판매 제품) 농산물 기부  
 \* 기부업체 : 서울시와 협약한 사업 동참하는 지정기관 연계 예정

\* 식자재 재활용 :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상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('21.4.19. 국립국어원 선정)

#### 2) 식생활 역량 강화 교육

- 기부식품 꾸러미 요리교실 운영 및 식생활관리 교육 등

### 3) 먹거리 가치 소비실천 환경조성

- 먹거리 가치소비 실천 홍보·캠페인 및 소통의 장 개최, 지역사회 먹거리나눔 실천 등



### 2. 지원자격

#### ○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, 법인, 사회적협동조합

-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 부터 등록증(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)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
- 민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
-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

### 3. 사업계획서 제출

- **접 수 일** : '22. 3. 24.(목), 10:00~17:00
- **접수방법** : 담당자 e-mail 제출([yhel1539@seoul.go.kr](mailto:yhel1539@seoul.go.kr))  
 문의 (☎ 02-2133-4739, 유혜은 주무관)

#### ○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 1부, 기관(단체)소개서 1부, 사업 추진계획서 1부
-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, 비영리법인 허가증, 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, (개인)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회칙(정관) 각 1부(스캔파일)
- 기타 증빙자료(정량평가를 위한 증빙자료)

#### 4. 사업선정 및 결과발표

- **심사일정** : '22. 3. 28.(월) ~ 4. 1.(금) (예정)
- **심사방법** : 식품정책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
  - 단체별 사업계획서 발표(10분) 질의응답(5분) 후 최종심의
  - ※ 신청 단체가 복수일 경우 제출 순서에 따라 발표
  - ※ 코로나-19 상황에 따라 발표는 취소될 수 있음(이 경우 서면심의)
- **선정결과 발표** : '22. 4. 1.(금), (예정)
  -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단체에 공문통보
  - ※ 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(법인)는 이의 제기 할 수 없음

#### 5. 선정단체 협약체결

- **체결기간** : '22. 4. 4.(월) ~ 4. 6.(수) (예정)
- **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**
  - 최종사업계획서, 이행보증보험증권, 보조금관리통장 등 구비

#### 6.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서울 소재로 등록·허가된 비영리 민간단체, 법인, 사회적협동조합, 개인사업자에 한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
-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·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
- 본 사업추진에 따른 조사,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
- 각종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
-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
-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

-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붙임 지방보조사업 운영 지침을 참고하며,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먹거리전략팀(☎02-2133-4720)으로 문의

- 붙임 1. 제안요청서 1부.  
2. 집행지침 1부.  
3. 참고자료 1부. 끝.